
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박상혁·이연희·이해식
이기현·한민수·조정식
김주영·남인순·한준호
이강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,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,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임원의 해임) ① 임명권자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5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6. 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② 교육부장관은 이사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임원의 해임) ① 임명권자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</u> <u>1.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<u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<u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4.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5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</u> <u>6. 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이사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

하는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